

< 물이용부담금 등의 제도개선을 위한 포럼 운영 최종 결과 보고서 >

---

##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선방안

---

2018. 6



# ☐ 목 차 ☐

I. 수질오염총량제도 개요 및 추진 성과 ..... 1

II. 현행 제도여건 및 한계점 분석 ..... 3

III. 개선목표 및 추진과제 ..... 6

참고1 오염총량관리제 운영 원리 및 추진체계 ..... 18

## I. 수질오염총량제도 개요 및 추진 성과

### □ 도입 의의

○ (농도관리의 한계) 도시화, 산업화 등으로 하천 유입 오염물질의 총량이 증가, 배출농도 중심의 관리로는 수질관리 한계에 직면\*

\* 경안천(팔당호 유입하천)의 경우 유역의 오염원 증가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했음에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져 IV등급 수준인 BOD 6.4mg/L로 악화('03년)

☞ 수계구간별 목표 수질을 달성·유지하기 위해 단위유역별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

○ (도입) 4대강 물관리 특별종합대책('98~'01)에 따라 오염총량제 도입

- 한강(팔당), 낙동강(물금), 금강(대청호), 영산강(주암호)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 유기물질 개선을 주요목표로 설정\*

\* 팔당(1.5 → 1.0), 물금(4.8 → 2.9), 대청호(3.2 → 2.0, COD), 주암호(2.9 → 1.9)

○ (확대) 4대강 및 기타수계에 순차적으로 오염총량제 시행

- (한강) 특대지역 7개 시·군에서 우선 시행('04~'12)하고(임의제), '13년부터 경기, 서울, 인천으로 시행 확대(의무제)

- (3대강) '04년부터 수계전역에서 시행, 5년 단위로 계획 수립·이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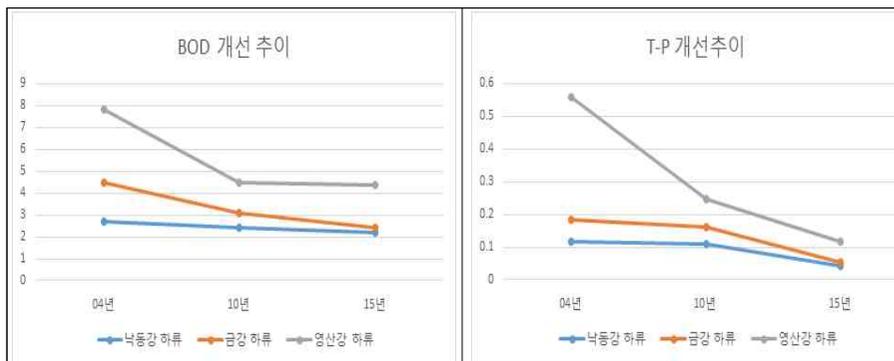
- (기타수계) 진위천('12~), 삼교호 수계('19~) 시행

3대강 수계 (낙동강, 금강, 영산강·섬진강)	한강 수계	기타 수계(임의제)
1단계 '04 ~ '10년 대상물질: BOD	임의제 '04 ~ '12년 대상물질: BOD 특대지역 지자체	진위천 수계 '12 ~ '20년 대상물질: BOD 경기 수원, 화성 등 8개 지자체
2단계 '11 ~ '15년 대상물질: BOD, T-P* <small>*금강은 대청호 상류지역만 적용</small>	1단계 '13 ~ '20년 대상물질: BOD, T-P 서울, 경기, 인천	삼교호 수계 '19 ~ '30년 대상물질: BOD 충남 천안, 아산, 당진
3단계 '16 ~ '20년 대상물질: BOD, T-P	2단계 '21 ~ '30년 대상물질: BOD, T-P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	
4단계 '21 ~ '30년		

□ 그 간의 성과

-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사후관리에서 환경용량을 고려한 사전예방적 관리로 전환
  - 오염원 관리계획을 수립, 매년 평가를 통해 하천의 환경용량 이내로 유역내 오염원을 통합 관리, '先삭감, 後개발' 원칙에 따라 개발 허용
- 환경기초시설 투자 확대 및 운영 효율화 유도
  - 총량제 시행('11~'15) 기간 동안 하수처리장 560천톤/일 신·증설, 하수관로 정비 4,784km
  -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법적 방류기준보다 강화된 총량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처리공정 및 운영 개선 유도
    - \* 방류수질 기준을 강화하여 법적 방류기준 준수시 보다 BOD 42,597kg/일(286개소), T-P 1,314kg/일(321개소) 저감('15년 기준)
- 오염물질 부하량 저감을 통한 하천 수질 개선
  - (부하량 감축) '10년 대비 오염물질 부하량을 BOD 25.8%, T-P 45.5% 감축(3대강)
  - (수질 개선) 제도 시행전 대비 BOD 18.5~46.7%, T-P 62.9~78.9% 개선(3대강)

< 3대강 수질개선 추이 >



II. 현행 제도여건 및 한계점 분석

1 제도여건 변화

□ 총량관리제도 여건 변화

- (계획기간 변경) 계획 수립·이행 기간이 중장기로 변경(5 → 10년)됨에 따라, 예측 및 평가기능 강화, 탄력적 제도 운영 등 대응체계 개편 필요
- (난분해성 유기물질 증가) 하천환경기준('15), 배출기준('21) 등에 TOC 항목을 도입하여 난분해성 유기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

□ 하천수질관리에 대한 이해관계자 요구 변화

- (물환경 수요) 물놀이 수요 증가,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 지천·하류까지 물환경복지에 대한 국민관심 증가
  - \* 전문가 설문조사(환경부, '16.12)에서 강화·확대되어야 할 물환경정책으로 '수생태 건강성 복원 정책'(36.5%)을 두번째 주요정책으로 제시
- (지자체) 지자체별 총량관리 여건에 맞도록 제도체계 정비 요구
  - \* 수질이 좋은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, 평가·제재 규정 정비 등

2 제도시행의 한계 ('04~'15)

1] 점오염원 및 유기물질(BOD) 중심의 총량관리

- (점오염원 삭감 치중) 삭감이 용이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주\*로 총량계획을 수립·이행하고, 가축분뇨, 도로먼지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

2] 유역관리 측면의 원인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 미흡

- (결과중심의 관리) 지자체는 주요 오염원의 근본적 저감 노력보다는 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부하량 삭감방식 위주로 제도 이행

\* 부하량 삭감이 인정되는 공공처리장 신증설에 주력하고, 가축분뇨·개인오수 처리시설·비점오염원(농경지, 도로) 등 다양한 수질개선 노력은 미흡한 편

○ (환경청 기능 활용 미흡) 오염원인 분석 및 대안제시 등 정책평가 미흡으로 환경청의 다양한 **유역관리 정책수단\***과 연계 부족

- 총량제도는 종합적인 오염원관리 계획 및 이행관리 체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, **할당부하량 초과 등 결과중심의 평가에만 국한**

\* 환경청은 각종 삭감계획(하·폐수, 비점 등) 승인·예산 지원, 오염원 점검, 각종 수질개선사업 추진, 상수원관리 등 규제부터 지원까지 다양한 관리 수단 보유

○ (지류개선 미흡) 본류 위주의 **단위유역 수질개선에 중점**을 두고 있어, 지역주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**지류 수질개선에는 한계**

\* 총량관리 목표수질이 설정된 하천의 90%가 하천 본류 또는 제1지류에 해당

○ (지역사회 참여 부족) 오염물질의 지속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**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**이나, 현행제도는 **정부·전문가 중심으로 추진**

③ 체계적 관리 미흡으로 제도 시행효과 반감

○ (시행계획 수립 면제지역 관리 소홀) 목표수질을 이미 달성한 지역은 시행계획 수립을 면제하여 **'지자체 관리부담을 완화'**하고 있으나,

- 당초 제도취지와 달리, **오염원 관리 소홀**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남

○ (관리체계 전반) 개선조치(연차평가 결과) 불이행 지자체에 대한 **실효적 강제수단 미비\***, **인센티브 부재**로 지자체 수질개선 노력 유인에 한계 등

\* 이행평가 결과 부하량 초과지역에 대해 삭감계획 이행, 시행계획 변경 등의 개선조치 불이행시 조치기간 미설정 및 미이행시 실효적 제재규정 부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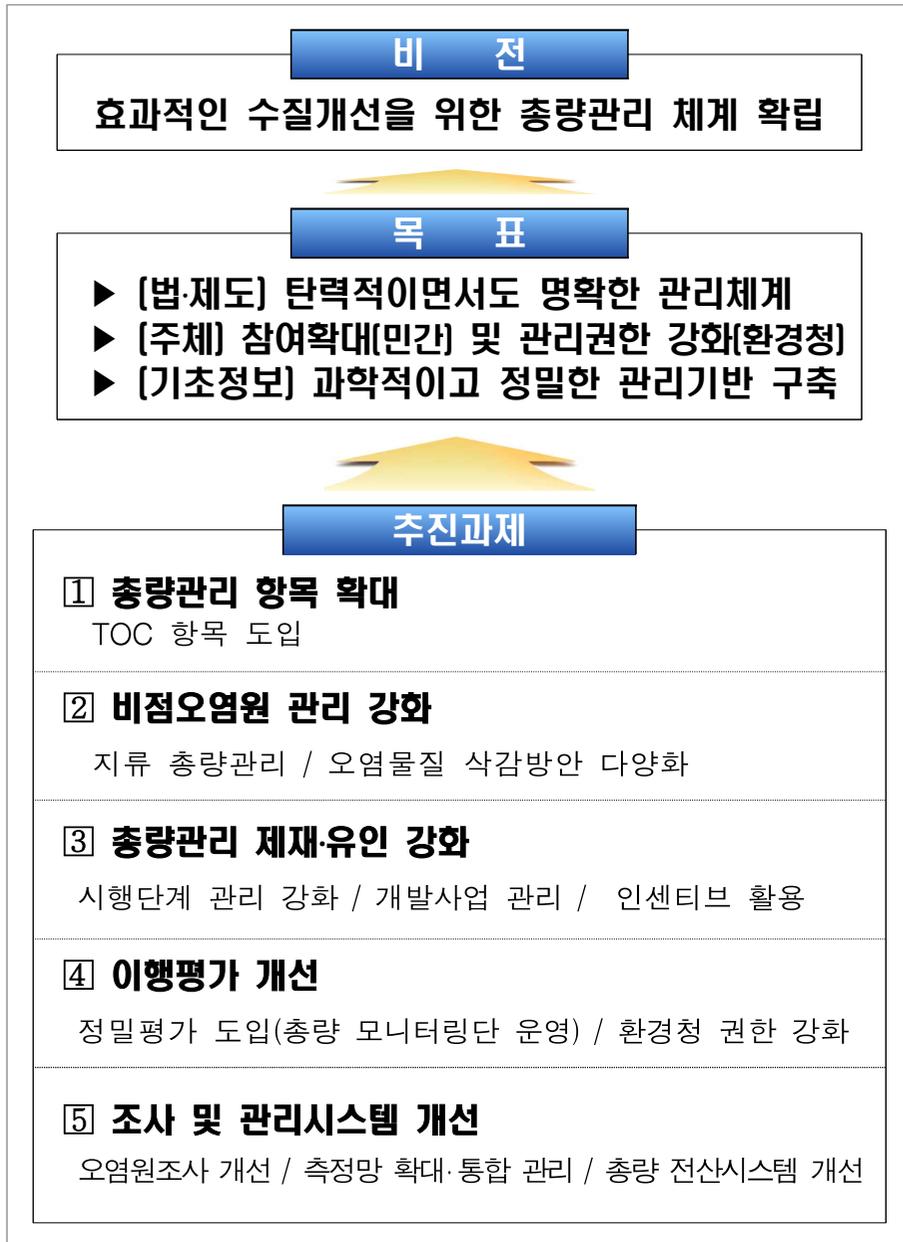
④ 총량관리의 과학적 정밀성 보완 필요

○ (수질-오염원 인과분석) 오염배출량 감소에도 수질이 **악화되는 사례**가 나타나 제도 신뢰도 저하 우려

- **현장조사 및 실측에 기반한 계획 수립 및 평가, 부하량과 수질간의 보다 과학적인 분석자료 제공 필요**

○ (기초자료의 정확도 저해) 오염원 조사 시 **지자체 제출 자료에 의존** (현장조사·실측 미흡) 등

### Ⅲ. 개선목표 및 추진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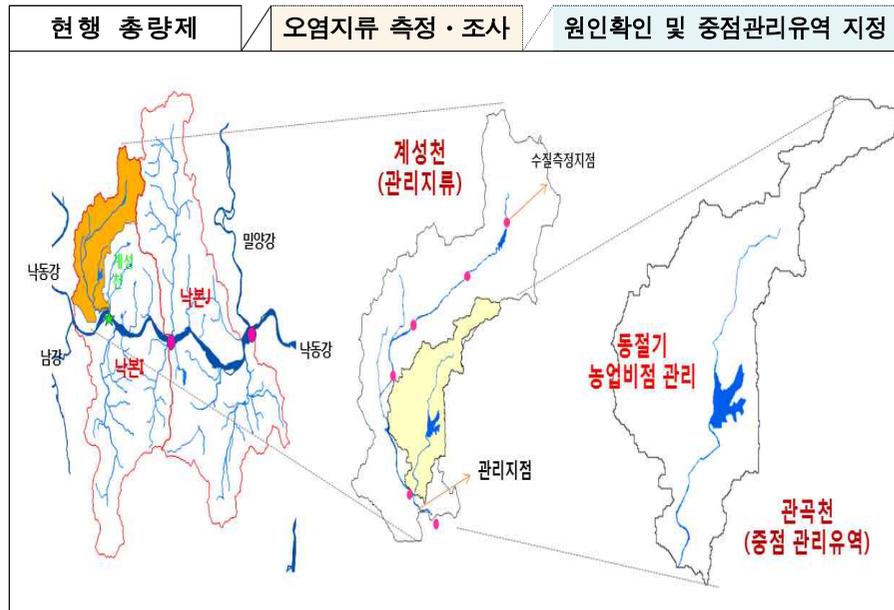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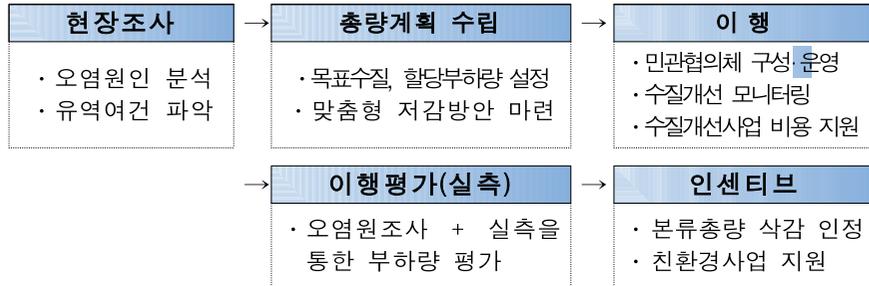


### Ⅳ. 추진과제별 세부계획

-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<b>1</b> | <b>총량관리 항목 확대</b>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- 1 TOC 총량관리 항목 도입**
- (도입배경) 수체내 난분해성 유기물질 배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총량관리물질로 TOC 항목 도입(현행 BOD, T-P)
    - \* BOD는 유기물질의 20~40% 측정, TOC는 유기물질의 90% 이상 측정가능
  - (추진내용) '22년 주요지역 총량제 시범 도입, '26년부터 전국수계로 확대 추진
    - 기술·제도적 시행기반 마련 이후 TOC 목표수질 설정 및 오염 부하량 할당
  - (기대효과) 오염물질 관리대상 범위 확대(생분해성 물질 → 高난분해성 물질)
    - 주요배출원 관리를 '생활하수 중심'에서 산업폐수 및 비점까지 확대·강화
- 
-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<b>2</b> | <b>비점오염원 관리 강화</b>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- 1 (지류 총량관리) 오염 지천에 대한 실측 기반의 지류총량관리 도입**
- (도입배경) 현행 오염원 조사기반의 총량관리체계 한계\*를 보완하고자 실측·현장조사를 통한 총량관리 방안 도입
    - \* 비구조적·간헐적인 발생 오염원(가축분뇨 방치, 무단방류, 관거누수 등)에 대한 관리 곤란
  - (관리방식) 현장조사를 통한 맞춤형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마을단위(민관협의체 구성·운영 등)의 이행책임 부여
  - (재정지원+인센티브) 지류총량관리 비용 지원\*, 성과지역에 대해 현행 총량제(분류중심)와 연계(삭감량 인정) 및 친환경 사업 지원 등
    - \* 주민지원사업, 비점오염저감, 가축분뇨 처리, 도랑살리기 등 기금지원

○ (기대효과) 官 주도 저감이 어려운 생활 비점오염원(경작, 쓰레기 등) 관리 강화, 주거인접 지천의 수질개선으로 주민의 친수공간 확대

< 지류 총량관리제 시행 절차 >



< 현행 총량과 지류 총량 비교 >

구 분	현행 총량제	(추가) 지류 총량제
관리지역	4대강 수계 전체(본류 중심)	오염도가 높은 지천
관리 대상물질	BOD, T-P	오염이 높은 수질오염물질
관리방식	오염원조사 → 부하량 할당·관리 (점오염원 - 실측 / 비점 - 실측 원단위)	· 오염원조사 → 부하량 할당·관리 <b>· 지천 상·하류 구간 측정 → 부하량 산정·관리</b>
저감방법	환경기초시설(점오염원 저감 중심)	비구조적 저감기법 도입(비점 저감 중심) * 예) 시비량 저감, 방치분뇨 처리, 토구·물꼬 관리 등
이행 책임	지자체(공공·민간시설관리 등)	지자체·지역주민
이행수단	불이행 제재 중심 (할당량 초과시 개발제한, 예산중단 등)	이행시 인센티브 부여 (지역내 친환경 사업 지원 등)
장 점	전국적 시행 가능(저비용·고효율) (측정망 366개소, 150명 총량인력)	비점오염원 관리에 유리 (비구조적·간헐적 발생 오염원)
단 점	비점오염원 관리 한계	· 전국적 시행 곤란(고비용·저효율) * 측정망 4,000개 이상, 1,000명 이상 인력 소요 · 수질 측정자료로 부하량 산정시 왜곡요인*으로 과다·과소 산정 * 하천의 자정작용, 수체내 물질반응 (질소 등)으로 인한 오염 악화 등

## ② 오염물질 삭감방안 다양화

○ (도입배경) 도로먼지, 경작지오염 등 비점오염원이 전체 오염원에 차지하는 비중은 높음에도 불구하고, 비점오염원 저감 노력 미흡

- 비점오염원 저감방식 중 체계적 관리·평가가 어려운 **非시설적인 저감방안에 대해 평가방식을 개발하여 비점 저감 확대 유도**

\* 현재는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저감효율이 인정된 시설 운영시에만 저감 인정

○ (주요내용) 우선 **측정·평가가 용이한 '도로청소'**를 저감방안으로 인정(18), 그 외 수단\*은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**단계적으로 확대**(19년~)

\* 농경지 시비 조정, 농수로 물꼬 관리 등

### < 비점오염원 삭감 수단 >

		
도로청소	농경지 시비량 조정	물꼬관리
		
벼집 피복	생태둠벙	실트 웬스

○ (기대효과) 강우·농사철 하천유입 오염물질 저감, 삭감방안 다양화로 환경 SOC 과잉 투자 방지

## 3

### 총량관리 제재·유인(誘引) 강화

㉠ (시행단계 관리 강화) 시행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한 중간평가 및 불이행 지역에 대한 이행력 확보수단 도입

○ (시행계획 수립지역 外지역) 하천수질이 좋은 지역(목표수질 既달성)에서도 매년 이행실적 확인\*, 중간평가(5년차)를 거쳐 부하량 초과시 시행계획 수립·이행, 할당시설 지정 등 관리 강화

\* 현재는 시행계획 수립지역이 아닌 경우 이행평가(매년) 대상에서 제외

### < 현행 시행계획 등 수립·이행 및 개선 비교 >

구분	시행계획 수립지역	(現) 수립지역外 지역	(개선) 수립지역外 지역
지정조건	목표수질 未달성	목표수질 既달성	좌동
계획수립	총량관리시행계획 (안전율* 10% 적용)	수질개선사업계획 (안전율 10% 미적용)	총량관리 시행계획 (할당 부하량 초과시)
이행평가	○ (매년, 중간)	X	○ (약식, 매년/중간)
할당시설 지정여부	○	X	○ (총량 시행계획 수립시)

\* (안전율)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한 오염배출량에서 장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일정비율(10%) 만큼 삭감하여 오염배출량을 할당

○ (불이행 지역) 총량계획 불이행 지자체에 대해, 개선 조치기간을 설정하고 미이행시 개발사업(환경영향평가 사업 등) 협의 제한

\* 현재는 개선조치 기한이 없고, 제재조치도 환경부 소관 예산 삭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효적인 이행강제 수단이 미비한 실정

○ (제재 절차) 단계평가(최종) 근거 및 할당부하량 초과지역에 대한 제재절차·해제조건 등을 명확화(초과사례별 제시)

② (개발사업 관리) 개발 인허가전에 허용총량 이내 개발여부 등을 환경청에 사전 검토하도록 하는 개발사업 협의제도 내실화

- (협의대상 확대) 현행 환경영향평가 등 규모가 큰 사업외에 오염 배출이 높은 축산시설(허가 이상), 폐수배출시설(1~3종) 등도 추가

< 개발사업시 총량협의 대상 확대 >

개발사업 협의대상(규모별)	현행	추가
대규모	환경영향평가 사업	폐수배출시설(1~2종)
중규모	20세대 이상 공동주택 800㎡ 이상 건축물*	폐수배출시설(3종), 축산시설(허가 이상)
소규모	800㎡ 미만 건축물*	-

\* 팔당·대청호 특별대책지역 I 권역내 건축물에 한해 개발사업 협의대상 적용

- (협의제한 조치 강화) ①지자체별·단위유역별 허용총량 초과시\* ② 공공하·폐수처리시설 유입량이 처리용량을 초과할 것이 명확한 경우 사업 협의 중단\*\* 조치(특별대책지역)

\* 현행규정(기본방침)의 중단조치 근거가 불명확하여 제재조치 규정 명확화

\*\* 지역개발부하량 잔여량이 남아 있음에도 불명수 유입 등으로 실제 유입량이 하수처리장 용량에 압박한 사례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규정 신설 필요

③ (인센티브 활용) 총량제 시행 우수 지자체는 안전율 조정(10→5%), 수질개선사업 예산 지원, 포상금 지급 등 이행 유인체계 마련

- (안전율 조정) 오염원 정밀조사, 삭감계획 이행실적(지류총량제 시행 등), 그에 따른 수질개선 수준 등을 평가하여 안전율을 조정(10%→5%)

\* 오염원 정밀조사 및 삭감계획 이행 등 지자체 노력으로 수질악화 요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경우에 한해 안전율 조정

- (예산지원) 목표수질이 달성·유지(“매우좋음” 등급 이상)되는 지역에 대한 수질개선사업 비용 지원, 강화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삭감 계획 이행 비용\* 지원(수계위 협의 필요) 등

\* 상수원지역, 목표수질 강화에 따른 오염삭감비용 추가소요분에 한해 지원

- (친환경 사업 지원) 지류총량제 우수 이행지역에 한해 지역주민 대상 친환경 사업비 지원(유사사례 : 한강수계 청정사업)

- (포상금) 총량관리 업무 기피 등 지자체 수행능력 저하를 막기 위해 포상금 제도 신설(총량 이행평가(현행) + 이행능력 평가(신설) 활용)

④ (물 사용·재이용 정책 연계) 물 이용단계부터 오염저감 유도

- (물 재이용 정책 연계) 빗물, 중수도, 하수 처리수 재이용 등을 오염배출량 저감방안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\* 방류량 측정지점 이후 재이용 공급관로가 설치된 경우 배출부하량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별도 유량계 설치, 재이용 용도 등 조사를 통해 저감량 인정

- (물 사용 정책 연계) 절수설비 보급 등 물 사용 절감실적을 삭감량으로 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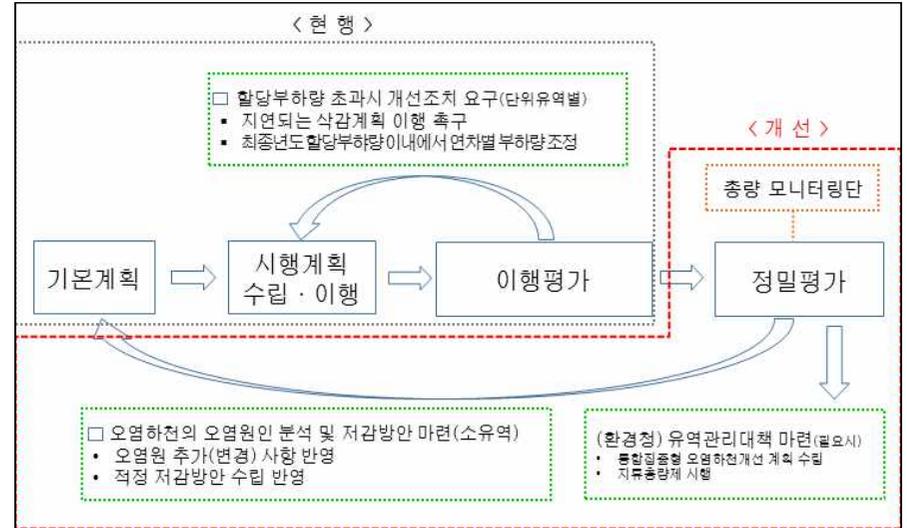
#### 4 이행평가 개선 및 환경청 권한 강화

##### 1 정밀평가 도입

- (도입배경) 오염부하량 초과 등 결과 중심의 이행평가를 보완하여 원인분석·대안제시 등을 위한 **현장중심의 정밀평가 도입**
- (개요) 이행평가(단위유역별 부하량 평가) 결과를 토대로 추가조사·분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다음년도에 **정밀평가 수행**
- (수행방법) 오염도가 높은 상류지천 중에서 정밀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**현장조사·분석\***을 통해 관리대안 마련
  - \* (현장조사) 단위유역내 주요 오염지천의 오염원 특성 확인(오염원조사, 현장 확인) 및 오염원 추적조사(수질·유량측정망, 현장확인, 각종자료 활용)
  - \* (원인분석)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천오염 원인분석(관거누수, 가축분뇨 관리 미흡, 하·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, 토사·비료 유출, 쓰레기 투기, 도로 비점 등)
- (총량 모니터링단 운영) 정밀평가 수행 및 개선조치 이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을 위한 **자문단을 구성**하고 외부 참여 확대
  - 환경청 주관, 전문기관(과학원, 환경공단 등), 학계,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
- (결과활용) 총량계획에 반영·이행관리(계획 변경, 지류총량제 시행 등), 필요한 경우 환경청 주관의 **유역관리대책 마련·시행**

구 분	(현행) 이행평가	(추가) 정밀평가
평가주체	○ 환경청 주관(과학원 검토) ○ 지자체 작성·제출	○ 환경청 주관 ○ 과학원(조사연구반) 검토·제출
평가대상	○ 총량계획 시행 전지역	○ 부하량 초과, 수질 악화 지역
평가범위	○ 단위유역내 모든 오염원	○ 소유역내 특정오염원
평가목적	○ 할당량 초과여부 확인 및 개선조치(삭감계획 이행 등)	○ 오염원인 분석, 관리 강화 ○ 유역관리 대안 제시
평가방법	○ 오염원 조사 제출자료 검증 및 부하량 산정 등	○ 현장조사·측정, 의견청취 등

##### ○ (기대효과) 총량계획과 유역관리정책의 연계 강화



##### 2 환경청 권한 강화

- (도입배경) 현행제도는 기술적 검토 중심(할당부하량 준수 확인)의 관리체계로 진행되어, **환경청의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제한**
- (정밀평가- 유역관리 연계) 환경청 정밀평가 주관, 평가결과에 따른 **관리권한 부여**(삭감계획 수립·이행 명령, 지류총량지역 선정·시행, 유역대책 연계 등)
- (제재·인센티브 주관) 불이행 지자체에 대한 **개발사업 협의 제한**(신설), **예산삭감(권한 위임)** 등 제재, 인센티브 지역 평가선정\* 등
  - \* 수계별로 다른 오염원(축산, 공장 등), 지역특성(도시, 농촌)을 반영한 수질관리가 가능토록 평가체계 운영

## ① 오염원 조사체계 개선

- (부하량 원단위 현행화) 오염원별 원단위 적정성 검토 및 물환경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화
- (검증체계 강화) 타부처 정책정보\* 활용근거 명문화, GIS 검증체계 도입(시설 폐쇄여부, 공공하수처리 등 확인)
  - \* 통계청·농림부 가축동향조사(축산계), 국세청 사업장 영업통계(산업계) 등
- (실태조사)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환경청 실태조사(현장확인, 측정·검증체계 도입(물환경보전법에 관련규정 신설)
  - \* 지자체 협조 의무, 타인 토지출입 허용 등 관련규정을 물환경보전법에 신설
- (지자체 전문성 강화) 지자체 오염원조사 업무 기피 및 관행적인 업무 처리(기존조사 자료 제출 등) 등 개선을 위해 관리방안(교육, 인센티브 등) 마련

## ② 물 측정망 연계·확대

- (기존 측정망) 물관리 기관별로 운영중인 수질·유량측정망\* 연계·조정(측정주기·항목·지점 등)으로 통합분석 능력 강화

## &lt; 기관별 측정망 운영 현황 &gt;

구 분	환경부			지자체	수자원 공사	농어촌 공사
	수문조사	총량측정망	수질측정망			
개소 수	215	334	370	330	111	955
측정주기	연 36회	연 36회	월 1~2회 또는 분기 1회			
측정항목	유량	BOD, COD, TOC, T-N, T-P, SS 등				
		유량	페놀류, 중금속 등	페놀류, 중금속 등	클로로필-a, 대장균군 등	중금속, 대장균군 등
측정지점	수위관측소	단위유역 말단	주요하천 및 지류	주요하천 및 지류	댐 호소내 취수구 인근	농업지역 소하천

- (신규 확대) 지천까지 측정망을 확대하여 본류부터 지류까지 수질 변화추이 분석, 오염지천 확인 및 원인분석 등을 위한 정책자료 제공

- ③ (총량 전산시스템 개선) 전산시스템으로 지역개발사업 협의를 진행하여 부하량 실시간 관리\* 및 협의절차 간소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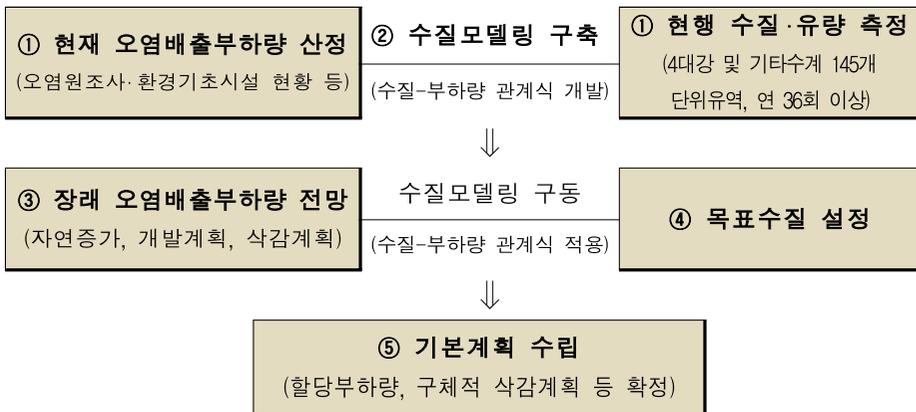
\* 지역개발부하량 소진량 및 잔여량 제시, 초과우려시 알림 기능 등

## 참고 1 오염총량관리제 운영 원리 및 추진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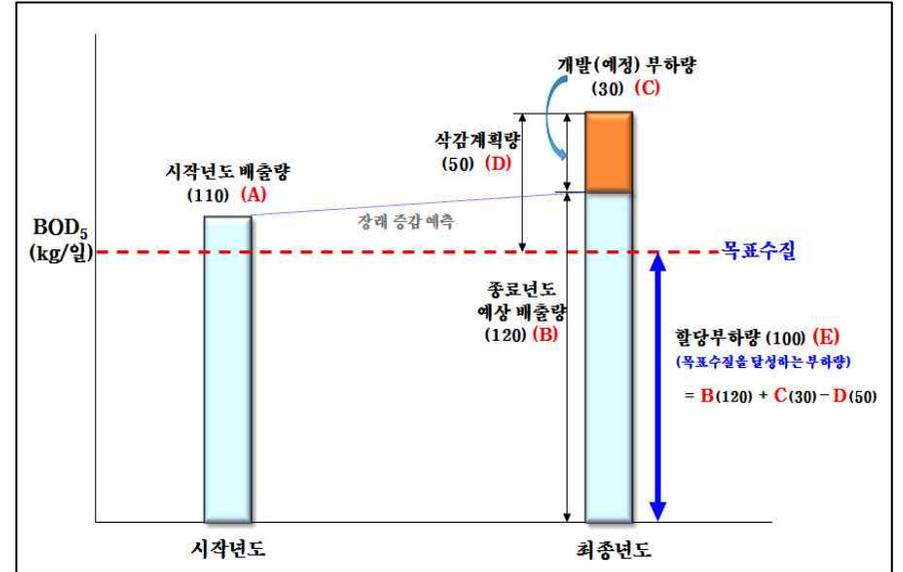
### □ 오염총량관리 운영 원리

- ① (오염원조사 ⇒ 오염부하량 산출) 오염원 조사(생활계, 산업계, 축산계, 토지계 등)를 토대로 현재 오염배출부하량을 산출
  - ※ 생활계·산업계는 배출유량 및 배출농도 등 실측을 통해 부하량 산정, 축산계·토지계는 마릿 수, 토지면적에 원단위를 곱하여 부하량을 산정
- ② (수질모델링 구축) 현재 오염부하량과 현재수질과의 관계식 개발
- ③ (장래 오염부하량 전망) 오염원의 자연적 증가(과거 5년치 자료 활용), 장래 개발계획, 환경기초시설 삭감계획 등을 토대로 장래 오염부하량 예측
- ④ (목표수질 설정) 구축된 수질모델링(부하량-수질 관계식)에 장래 오염부하량을 입력하여 목표수질 도출

### <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도출 모식도 >



- ⑤ (기본계획 수립-할당부하량 확정) 오염원의 자연적 증가를 반영한 최종년도 예상 배출량(B)에 개발예정부하량(C)을 더하고,
  -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수준의 할당부하량(E)까지 삭감(D)하는 것으로 총량 기본계획을 수립



### □ 추진체계

